### 교원 전형·임용 지침

제 정 2001. 12. 28 개 정 2003. 9. 1 개 정 2005. 11. 1 개 정 2007. 10. 29 개 정 2010. 7. 1 정 개 2011. 6. 1 개 정 2011. 11. 1 개 정 2013. 5. 1 개 정 2013. 11. 1 개 정 2016. 9. 1 개 정 2018. 5. 21 개 정 2019. 12. 24 개 정 2020. 6.15

#### I. 교원 전형

#### 1. 전형 원칙

금강대학교에 근무할 교원의 전형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적으로 한다. 다만, 공개 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분야 전공자나 중견교수 등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 하여 전형할 수 있다.

#### 2. 전형 절차제

#### 가. 전임교원

- 1) 교학지원처는 교수채용기본계획(안)을 수립한다.
- 2) 교학지원처는 수립된 교수채용기본계획(안)을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는다.
- 3) 교학지원처는 교수채용 공고문을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초빙분야, 초빙인원, 지원자격 등을 명시하여 일간신문•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 에 게재하여 지원서류를 접수한다.
- 4) 교학지원처는 1차 기초심사(서류) 및 2차 전공심사(연구실적물)를 위하여 분과전형위원회를, 공개강좌 및 면접심사를 위하여 신임교원전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수채용일정을 통지한다. 단, 필요한 경우에는 총 장이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5) 교학지원처는 접수된 1차 서류를 분과전형위원에게 인계한다. (교수임용지원서, 연구실적 목록, 연구 및 수업계획서[양식/교인-1, 2, 3], (영문)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
- 6) 분과전형위원은 지원서류를 심사하여 결과를 제출한다. 1차후보자선정 기초심사(서류)기준 및 심사표[양식/교인-4]

7) 교학지원처는 분과전형위원의 기초심사(서류)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신임교원전형위원회에 상정·심의하여 1차후보자를 다음 기준으로 선정한다.

#### ▶ 1차 후보자선정기준

접수인원	선정인원
15명 이하	3-5명
16-30명	5-7명
31명 이상	7-10명

1차 후보자선정 보고서[양식/교인-4-1]

- 8) 교학지원처는 전공심사(연구실적)를 위하여 1차후보자에게 임용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등재지 이상 실적물 2편 이상을 제출 받는다.
- 9) 교학지원처는 분과전형위원에게 전공심사(연구실적물)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를 받는다.

전공심사(연구실적)보고서[양식/교인-5]

- 10) 교학지원처는 2차후보자 선발을 위하여 분과전형위원의 기초심사(서류)와 전공심사(연구실적물)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2차후보자(공개강좌 및 면접대상자) 선정을 위하여 신임교원전형위원회에 상정·심의하다.
- 11) 신임교원전형위원회는 기초심사(서류)와 전공심사(연구실적물)결과를 토대로 2차 후보자를 다음 기준으로 선정한다. 다만, 전공심사(연구실 적)심사위원 중 채용분야에 대한 논문의 합당도에서 50% 이상의 심 사위원이 불합당으로 판정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#### ▶ 2차 후보자선정기준

접수인원	선정인원
15명 이하	2명이상
16명 이상	3명이상

2차 후보자선정 보고서[양식/교인-6] 2차 후보자선정 기준 및 심사표[양식/교인-7]

- 12) 신임교원전형위원회는 2차 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강좌 및 면접을 실시한다. 공개강좌 및 면접평가서[양식/교인-8]
- 13) 신임교원전형위원회는 공개강좌 및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. 최종후보자 선정보고서[양식/교인-9]
- 14) 교학지원처는 최종후보자에 대한 직위별 경력과 연구실적을 산정한다. 대학교원임명제청자조서[별첨 1], 연구실적점수 산정표[별첨 1-1]
- 15) 교원인사위원회는 교학지원처에서 산정한 직위별 경력과 연구실적을 심의하고 임명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한다.

16) 교학지원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에 대한 임용을 법인 이사회에 제청한다.

#### 나. 강의전담교원

- 1) ~ 3)항 전임교원 전형절차와 동일
- 4) 교학지원처는 1차 기초심사(서류)를 위하여 분과전형위원회를, 공개강 좌 및 면접심사를 위하여 신임교원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수채용일 정을 통지한다. 단, 총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5) 교학지원처는 접수된 1차 서류를 분과전형위원에게 인계한다. 단, 접수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전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6.15.>
- 6) 분과전형위원은 지원서류를 심사하여 1차 기초심사(서류)통과자를 다음 기준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제출한다.
  - ▶ 1차 기초심사(서류)통과자 선정기준

접수인원	선정인원
15명 이하	3명 이상
16-30명	5명 이상
31명 이상	7명 이상

강의전담교원 기초심사(서류)기준 및 심사표[양식/교인-나, 나-1] 1차 기초심사(서류)통과자 선정보고서 및 심사표[양식/교인-다]

- 7) 교학지원처는 분과전형위원의 기초심사(서류)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- 8) 신임교원전형위원회는 1차 기초심사(서류)통과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,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. 다만, 외국인 강의전담 교원 채용시에는 분과전형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.

면접평가서[양식/교인-라]

최종후보자 선정보고서[양식/교인-마]

- 9) 교학지원처는 최종후보자에 대한 직위별 경력을 산정한다. 대학교원임명제청자조서[별첨 1]
- 10) 교원인사위원회는 교학지원처에서 산정 한 직위별 경력을 심의하고 임명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한다.
- 11) 교학지원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에 대한 임용을 법인 이사회에 제청한다.
- 3. 분과전형위원, 신임교원전형위원회 및 교학지원처 조치사항 가. 분과전형위원

1) 구성

해당학부장, 총장이 지명하는 전공관련 교수,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. 단, 강의전담교원 채용시는 외 부전문가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.

- 2) 임무
  - 가) 기초심사(서류) 1차후보자선정 기초심사(서류)기준 및 심사표[양식/교인-4]
  - 나) 전공심사(연구실적물) 전공심사(연구실적)보고서[양식/ 교인-5]

### 나. 신임교원전형위원회

1) 구성

총장, 교학지원처장, 기획관리처장, 해당학부장, 총장이 지명하는 2 인 이하의 전공관련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- 2) 임무
  - 가) 1, 2차 후보자 선정
    - 1, 2차 후보자 선정 보고서[양식/교인-4-1, 6], 2차 후보자선정기 준 및 심사표[양식/교인-7]
  - 나) 2차후보자 공개강좌 및 면접 공개강좌 및 면접평가서[양식/교인-8]
  - 다) 최종후보자 선정 최종후보자 선정 보고서[양식/교인-9]

#### 다. 교학지워처

- 가) 교수채용기본계획(안) 수립
- 나) 분과전형위원, 신임교원전형위원회 구성
- 다) 신임교원전형·임용 지침 및 일정통지
- 라) 교수채용 대중매체 게시 공고
- 마) 지원 서류접수
- 바) 서류 및 연구실적물 심사의뢰
- 사) 최종후보자 경력 및 직위별 연구실적 점수 계산 대학교원임명제청자조서[별첨1]. 연구실적 점수 산정표[별첨1-1]
- 아) 기타 행정업무

#### Ⅱ. 교원 임용

#### 1. 임용 원칙

교원의 전형 절차에 따라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교육 및 연구경력, 연구실적 평가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임용함을 원칙

으로 한다.

#### 2. 임용 교원의 교육 및 연구경력 산출

신규임용 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율 산출기준(별첨2, 이하 "경력산출기준"이라 한다)에 의하여 산출한다.

- 가. 학위취득에 따른 경력산출은 취득한 학위의 개수와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석사학위 취득은 2년까지, 박사학위 취득은 3년까지 인정하며 합산하여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한 경우 중복된 기간은 한 기관의 경력만을 인정한다.
- 다. 대학에서 근무한 조교, 시간강사 및 코치 등의 경력은 경력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각 경력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라.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각 기관별 경력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마.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외 4년제(2년제 포함) 정규대학, 공공 연구기관,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% 인정한다. 다만,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근무한 경력은 70%까지,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근무한 경력은 50%까지만 인정한다. 여기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란 월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유급 연구직을 의미하며, 무급 또는 부정기 급여 연구원의 경우는 박사학위취득자 50%, 석사학위취득자 30%로 산출하며 학사학위취득자는 인정하지않는다.
- 바. 산업체 등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되,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산업체 등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70%로 인정한다.
- 사.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% 인정하되 국가에 따라 1년 의 근무를 9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1년으로 산출한다. 다만, 객원교원, 초빙교원, 연구교원 등으로 외국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은 계약서(증빙서)에 명시된 기간만을 인정한다.
- 아. 대학(2년제 이상)에서 비전임교원(객원, 초빙, 겸임교원 등)으로 근무한 경력은 주당 수업시간이 9시간 이상인 경우 70%, 9시간 미만인 경우 60%로 산출한다.

### 3. 임용 교원의 연구실적평가

가. 신규임용 교원의 연구실적물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한다. 단,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, 업무실적, 포상실적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실적에 준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- (1) 박사학위논문
- (2) 국내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학술논문
- (3) 국외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학술논문
- (4) 출판된 학술회의 논문
- (5) 학술저서
- (6) 통번역활동 실적
- 나. 신규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한다.
  - (1) 연구실적의 평가는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기간을 1년 단위별로 평가하되, 인정비율은 1인의 경우는 100% 공동저자인 경우는 2인 70%, 3인 50%, 4인 30%, 5인이상은 100%를 발표자수로 나눈 비율로 하되, 주저자(또는 책임저자 등)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.
  - (2) 박사학위 논문은 200점으로 인정한다.
  - (3) 국내외 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3조 (연구업적평가)를 따른다.
  - (4) 학술회의 논문은 심사제도가 있는 학술회의 논문으로서 논문집 (proceedings) 으로 발간된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국내외 학회 학술논 문 평가점수의 최대 50%이내에서 인정한다.
  - (5) 통번역 활동에 대한 실적평가는 별도로 정한다.
  - (6)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근무 경험자의 경우 근무경력, 업무실적, 포상실적 등의 평가는 별도로 정한다.

#### 4. 임용 교원의 직위 및 호봉책정

가.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직위는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연구실적에 따라 조교수, 부교수,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 신임교원 임용 시 직위별 교육 및 연구경력과 연구실적 충족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임용직위	교육 및 연구경력 최소기준	평가대상기간	연구실적 평가기준 점수
조교수	4년	최근 5년 이내	1,000점 이상
부교수	7년	최근 7년 이내	2,100점 이상
교 수	10년	최근 9년 이내	3,000점 이상

주1) 상기 연구실적 평가 기준 점수는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(연구업적평가)를 따른다.

- 나. 신규임용 교원의 전적 경력이 국내 정규 2년제 내지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일 경우에는 이전의 교육 및 연구경력 연수, 연구실적 평가점수가 본 대학교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과 동일한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.
- 다. 외국의 정규 4년제 대학 재직시의 직위는 국가에 따라 국내 대학과 제도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직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 및 연구경력과 연

구실적 평가에 따라 직위를 결정한다.

### 5. 신규임용 계약기간

신규임용 교원의 해당 직위별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

구분	계약기간	비고
조교수		상위법인 법인정관 및 교원인사규
부교수		정에 의거 최초 신규임용 기간
교 수		2년 이내

#### Ⅲ. 세부사항

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# Ⅳ. 시행시기

- 1. 이 지침은 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개정 지침은 2003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.
- 3. 이 개정 지침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이 개정 지침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5. 이 개정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6. 이 개정 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7. 이 개정 지침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8.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9.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0.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, 2016학년도 2학기 신규 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- 11.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12.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Ⅱ. 교원임용 3. 임용 교원의 연구실적평가 가.의 본문, 나.의 (6))
- 13. 가.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나. (경과조치) 2020학년도 9월 1일 이후 임용된 신규교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### [별첨 1]

자     학     력       H당     과목						대	학 교	. 원 약	임 명	제	청 자 3	조 서	
전	제	소	Ę	속				진명	현	직 명		제 청 직	명
전     년 월 일     기간     직     종     환산율     환산연수     비       연     구     경       경     력       세     사     교       자리기준해당유무     합당・불합당     구비서류상황     완료     보충       실     사     20       사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  전     20 <td< td=""><td></td><td>성</td><td>1</td><td>명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(</td><td>호봉)</td></td<>		성	1	명								(	호봉)
연 구 경 력 계 차 교 육 항 경 력 계 합계 자격기준 연구 교육 경력 연수 업적 평가 연구 교육 경력 계 교육 연구 봉사 계 평가결과 총 평 자격기준해당유무 합당 분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 · 보충	자	학	Ĭ	력									
지 경 력 리 계 사 교 육 형 력 연수 업 적 평 가 교육 경력				년 -	월 일	기간		직	곃	-	환산율	환산연수	비고
정 범 계 시 교 육 형 경 력 연 수 입 적 평 가 제 정평가 자격기준 경력 연 수 연구 교육 경력 계 교육 연구 봉사 계 평가결과 함 및 자격기준해당유무 합당 · 불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 · 보충		연											
경 릭 계 사 교 육 경 택 연 수 업 적 평 가 연구 교육 경택 계 교육 연구 봉사 계 평가결과 등 평 자격기준해당유무 합당 불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 · 보충		구	-										
력     계       사     교육       항     경       력     계       합계     장력연수     업적평가       제청평가     자격기준연구 교육 경력 계     교육연구 봉사 계       평가결과     합당・불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 · 보충       심사 20     시사자     화 이 자	<b>→</b> 1	경											
지 사 교 육 경 를 연 수 업 적 평 가 전기준 전략 경력 계 교육 연구 봉사 계 평가결과 등 평 자격기준해당유무 합당・불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 · 보충	/ð	력											
사 교 육 항 경 력 연 수 입 적 평 가 제 청평가 자격기준 연구 교육 경력 계 교육 연구 봉사 계 평가결과 참 평 자격기준해당유무 합당·불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 · 보충	력												
항 경 력 계 합계		계											
항 경 력 의 기계 기준 한당 · 불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 · 보충 심 사 20 시 사 자 화 이 자	사	11/	-										
경 력 계 합계 지정평가 자격기준 연구 교육 경력 계 교육 연구 봉사 계 평가결과 합당・불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 · 보충	줐).	육	-										
지 합계 경력 연수 업적 평가 연구 교육 경력 연구 보사 계 평가결과 참 이 자 보충 심 사 20 시사자 확 이 자	36	경											
합계    경력 연수 업적 평가 연구 교육 경력 경력 경력 계 교육 연구 봉사 계 평가결과   *** 항당 *** 불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 *** 보충 심 사 20   시사 자 화 이 자		력											
지청평가 자격기준 연구 교육 계 교육 연구 봉사 계 평가결과 참 평 자격기준해당유무 합당·불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 · 보충		계											
지청평가 자격기준 연구 교육 계 교육 연구 봉사 계 평가결과 명가결과 합당·불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 · 보충 심 사 20 시사자 확 이 자		합7	계										
평가결과     항당·불합당     구비서류상황     완료 · 보충       심사 20     시사자     화 이 자	제천평	가	자2	벽기준		교육		계	교	육			계
총 평 자격기준해당유무 합당·불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 · 보충 심 사 20 시 사 자 화 이 자	1100		ज	J 74 -J	0 7	10 7							
심 사 20 시 사 자 - 화 이 자	<u></u> 총 평				·유무	하드	 	· 당	구ㅂ	비서류/	· 항	와료 ·	보충
년월일	심 사								•				
7				•	• •		<u>'  </u>			-1			
근무           조건													

[별첨 1-1]

### 연구실적 점수 산정표

성명: 예정직위: 실적산정기간: . . -

발표 구분	저자명(전원)	계	목	게재지명	발행기관	발 표 년월일	산정 점수	등재 여부

<sup>※</sup> 발표구분 : ① 박사학위 논문 ②국내외 학회 학술지 논문 ③국내외 학술회의 논문 ④학술저서

<sup>※</sup> 최근 발표된 실적부터 작성하십시오.

[별첨 2]

###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률 산출기준

[ <u>四</u>	역 완산물 산물기는		
   경 력 내 용	교수자격인정심사	환산	비고
0 7 1 0	준칙	인정율	
1. 교육경력			
│ │ 가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			
□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			
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	100	좌동	
력			
②사관학교의 교관(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)으로	100	カヒ	
근무한 경력	100	좌동	
③학력인정을 받는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 근무	100	カヒ	
한 경력	100	좌동	
④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	60	키드	
근무한 경력	60	좌동	
	50(단, 주당5시간 이하		
	는 30%, 주당5시간 초		7시간 이
⑤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	과시에는 시간당 10%	좌동	상 50%
	가산하되, 50% 를 넘		0 3070
	지 못한다.		
나.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			
①중·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학과	40 50	<b>5</b> 0	
목과 부합되는 경우	40 - 70	70	
②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	40 50	4.0	
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	40 - 70	40	
③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	40 50	4.0	
목과 연계되는 경우	40 - 70	40	
다. 조교 및 체육 코치 등			
다. 소교 및 세탁 코시 중 			
①대학 (총)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	50 - 70	70	
②공인된 체육단체(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) 및 각 대			
학의 체육코치	50 - 70	50	
2. 연구경력			
가. 최종 학위취득자			
①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	100	좌동	3년 이내
그 연구경력	100	과 중	이번 의대
②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	100	좌동	2년 이내
연구경력			_ ' ''

경 력 내 용	교수자격 인정준칙	환산인 정률	비고
나.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			
①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. 단,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 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경력	70	좌동	3년X0.7 이내
②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	70	좌동	2년X0.7 이내
다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			
①교욱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(실험실습을 포함한다)를 대학·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	100	좌동	
라.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			
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	100	좌동	
3. 산업체 등 근무경력 가.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			
①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군경력 포함)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70	좌동	
②대학(전문대학 포함)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.	70	좌동	
③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 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60 - 100	70	
나.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			
①공과계대학(공업교육대학, 공업교육학과 포함)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·대기업체 등	50 - 70	50	
·중기업체	50 - 70	50	
②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	50 - 70	50	
③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사 및 편집원으로 근 무한 경력	50 - 70	50	
④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·대기업체 등	50 - 70	50	
·중기업체	50 - 70	50	

경 력 내 <del>용</del>	교수자격 인정준칙	환산인 정률	비고
다.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			
①판사·검사로 근무한 경력	70 - 100	100	
②변호사 개업 또는 근무기간	70 - 100	100	
③공인회계사·세무사·공인감정사·토지평가사·변리사 개업 또는 근 무기간	50 - 70	70	
④한국 해양대학, 부산 수산대학,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 1등 항해사(기관사)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, 항공 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	100	좌동	
라. 의사등 근무경력			
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	50 - 70	70	
②의과대학 졸업자의 (한)의원 개업기간	50 - 70	70	
③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부장관 인정기관 전문 의사 근무	50 - 70	70	
④국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,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원 근무경력	50 - 70	70	
마. 성직자 근무경력			
①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	50	좌동	
②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	50	좌동	
바. 외국공관 근무경력			
①대학에서 외국어과를 전공한 자의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	70	좌동	
사. 예·체능 관련 단체 주요임원			
①공인된 상설 예·체능 및 창작·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	50 - 70	70	

### [양식/교인-1]

# 교수임용지원서

20 학년	l도 제 학	7]									접수	-번호		
지원학부	<u>1</u>									학부 학과		사	~ 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	
지원분	야								_			<u> </u>	~L	<u>.</u>
성	명 (국문)			(	영문)			(한문	)				!이내에	
1. 인적사항												₹ 5cm	x 세로	4cm)
성	별	남 • 여	व	Ę	국 적					병 역	필	• п	필 •	면제
생년월	일 19	년	월	일	(만	세)	주기	민등록	번호			_		
본	적													
현 주		번호 :	-		)					전	자 및			
(국내연락	'처)									_ 화 번	직 7 핸드			
현근무	지									호	e-n			
결혼여	부 기흔	민혼	배우기	아 Z	식업					종 교				
2. 학	력사항									111-				
구 분	7]		간		학	교 문	3	전	공		최두 월일	학 위 취득국	수 료 /과정 증	평점평 균 (G.P.A )
고등 학교	년 월	일-	년 월	일										_
학사	년 월	일—	년 월	일										/
석사	년 월	일—	년 월	일										/
박사	년 월	일-	년 월	일										/
학위	석사	지도 교수				논문 제목								
논문	박사	지도 교수				논문 제목								

3. 7	3. 경력사항[관련 증빙자료 제출]																
기 간										근무년	1월	근	무	기	관	명	직위(담당업무)
199	년	월	•	일 –	-	199 년		월	일	년	월						
199					_	199				년	월						
199					_	199				년	월						
199					_	199			•	년	월						
199					_	199			٠	년	월						
199					_	199			٠	년	월						
20					_	20			•	년	월						
20					_	20			•	년	월						
20					_	20			•	년	월						
20					_	20			•	년	월						
20					_	20				년	월						

4. 기타사항(사회단체 참여현황 등)

위 기록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.

20 년 월 일

지 원 자 : ① 또는 서명

[양식/교인-2]

### 연구실적 목록

지원분야 :

성 명 :

발표 구분	저자명(전원)	제 목	게재지명	발행기관	발 표 년월일	등재 여부

#### ※ 발표구분 :

- ① 박사학위논문 ② 국내학술지 논문 ③ 국외학술지 논문 ④ 국내학술대회발표 ⑤ 국외학술대회발표 ⑥ 학술저서
- ※ 위 발표구분별로 최근 발표된 실적부터 작성하십시오.[심사용 이외에는 각1부씩 제출]

[양식/교인-3]

# 연구 및 수업 계획서

지원분야 :	성 명 :	
1. 현재 진행중인 연구		
a 원호 시크레워		
2. 향후 연구계획		
3. 수업계획서		

### 통 역 활 동 내 역 서

지원분야: 성명:

지원분야 :			성 명 :					
통역활동 내역								
번호	회 의 명	통역기간	주관기관	통역유형	비고			
		3 , 13	, , , ,		,			

\* 20 .. 이후 활동내역만 기재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 하십시오

### 통 · 번 역 활 동 내 역 서

지원분야: 성명:

지원분야 :			성 명	:			
		통역후	활동 내역				
번호	회의명	통역	<b>루기간</b>	주관기관	통의	<b>후유형</b>	비고
		મો છો રં	 활동 내역				
		빈 뒤 *	원 등 네 극 				
번호	번역내용	번역량	번역기간	의뢰기관	ŀ	번역	비고
						유형	
						<u></u>	

※ 20 .. 이후 활동내역만 기재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 하십시오

### 번 역 활 동 내 역 서

지원분야: 성명:

시원문야 :		성 병	•				
번역활동 내역							
번호	번역내용	번역기간	의뢰기관	번역유형	비	卫	
_					<de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del>		

※ 20. . 이후 활동내역만 기재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 하십시오

[양식/교인-4] <분과전형위원용>

### 기초심사(서류) 심사표

#### 지원자:

구 분	비율 (%)	刵	H 점	적 용 기 준	심사점수	
		일	30	학사과정, 석사과정, 박사과정이 모두 동일한 경우		
		일반분야	20	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동일하나 학사과정이 다른 경 우		
		야	10	학사과정, 석사과정, 박사과정이 모두 다른 경우		
전공적격	30	통	30	석사과정(또는 박사)이 전공분야와 동일하고 실무경력 이 우수한자		
		통역분야	20	석사과정(또는 박사)이 전공분야와 동일하고 실무경력 이 보통인자		
		야	10	석사과정(또는 박사)이 전공분야와 동일하고 실무경력 이 미흡한자		
	부	니적 Z	4	초빙분야와 박사학위 전공 일치도 및 연구일치도가 상 이한 경우		
학부성적	5		5	학부성적이 90점 이상인 자		
47.87	J		3	학부성적이 90점 미만인 자		
	20		20	4년제 정규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자, 또는 고등 고시 합격자		
연구 및	20	20	]	15	6년 이상	
교육경력	교으거려   -		10	3년 이상 - 6년 미만		
			5	3년 미만		
연구실적		2	20	600점 이상		
(최근 5년 이내의	20	]	15	500점 이상 - 600점 미만		
실적)			0	500점 미만		
향후 연구계획 및 자기소개	5	5   0-5		연구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, 교수로서의 자질, 본교의 건학이념과 부합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		
사회 및 학회활동	5			사회 및 학회 활동이 우수, 보통, 미흡 정도로 판단함.		
기타	15	0-	-15 상기외 학교인지도등 서류심사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 부여			
계	100					

\* 전공적격 항목에서 부적격일 경우 또는 연구실적에서 0점을 받은 자는 다른 항목의 점수에 관계없 이 후보자서 탈락 처리함.

심사자 (소속) (성명) (인)

- \* 평가방법
- 1. 학부성적(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 해당 전체 평점평균성적 / 해당교 평점 만점 \* 100
- 2. 연구 및 교육경력

일반분야 : 해당 박사학위 취득후 경력만 산출(단, 4년제 전임교원, 고등고시 합격자는 학

위취득일에 관계없음)

통역분야 : 해당 석사학위 취득후 경력만 산출

- 3. 연구실적
  - 가. 박사학위논문: 100점
  - 나. 국내외학술지 논문 : 단독(100%), 2인(70%), 3인(50%), 4인(30%), 5인(100/저자수 %)
- 1) SCI, SSCI, A&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(환산율 2배적용) 또는 각 학문분야별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학술지: 200점
- 2) 한국연구재단 등재(등재후보지 포함)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평가 A급(B급 포함) 학술지: 100점
  - 3) 기타 학술지 : 50점
  - 다. 국내외학술대회 발표논문 : 학술지 논문 기준 점수의 50% 부여(기타학술지 제외)
- 라. 학술저서 : 단독기준 100점. 단,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는 국정 또는 검인정인 경우 70점 부여

[양식/교인-4-1] <신임교원전형위원회 작성용>

### 1차 후보자 선정 보고서

학부(학과) :

20 학년도 신임교원 채용 1차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.

채용분야	후보	자
শকত	접수번호	성 명

※ 첨부 : 기초심사(서류)기준 및 심사표 각1부.

200 . . .

위원	(인)	위원	(인)	위원	(인)
위원	(인)	위원	(인)	위원	(인)
위원	(인)	위원	(인)	위원	(인)

신임교원전형위원회 위원장 (인)

[양식/교인-5] <분과전형위원 전공심사(연구실적)용>

### 전공심사(연구실적) 보고서

지원자 성명		채용분야			
	재요) 불 받으신 연구실적에 대한 / 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하십		적별로 작성하지	마시고, 전체	연구실적에
※ 칸이 부족: 평가점수	하면 뒷면 또는 별지에 작성		A. 에 대한 논문의 불합당	합당도	
심사위원 <u>소</u> 속 약		) <u>성 명</u>		<u>୍</u> ପ	<u>전 공 분</u>

- ※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취득점수를 기입하십시요.
- ※ 분야에 대한 논문의 합당도란은 O표로 표시하여 주십시요.
- ※ 이 보고서는 각 지원자별로 작성·제출하여 주십시요.

[양식/교인-6] <신임교원전형위원회 작성용>

### 2차 후보자선정 심사표

심사자 :

(인)

			기초심사	전공심	사(연구/	실적)	기초심사(서류)		
채용 분야	성	명	(서류) 점수(평균)	심사위원	점수	논문 합당도	+ 전공심사 (연구실적)	선정여부	비 고
				평균					
				평균					
			_						
				평균					
			-						
				-21 -7					
				평균					
				 평균					
				% स					
							_		
				평균					
				-0 tL					

<sup>\*</sup>논문합당도에서 50% 이상의 심사위원이 불합당으로 판정하는 경우 점수에 관계없이 후보자서 탈락 처리함.

[양식/교인-7] <신임교원전형위원회 작성용>

### 2차 후보자 선정 보고서

학부(학과) :

20 학년도 신임교원 채용 2차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.

all O H AL	후보자				
채용분야	접수번호	성 명			

※ 첨부 : 채용분야별 2차 후보자선정 심사표 각1부.

200 . . .

위원	(인)	위원	(인)	위원	(인)
위원	(인)	위원	(인)	위원	(인)
위원	(이)	위워	(히)	위워	( 0] )

신임교원전형위원회 위원장 (인)

[양식/교인-8] <신임교원전형위원회 작성용>

### 공개강좌 및 면접평가서

지원학부(학과):

후보자 성명 :

항 목	평	가	드 그
학력 및 경력			
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			
학교 발전에의 기여도			
내용 전달의 조직성과 명확성			
질문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			
종 합 의 견			
판 정			

평가자 성명: (인)

- ※ 지원자의 제출서류, 전공심사(연구실적)결과, 공개강좌 평가결과, 면접 등을 토대로 작성하여 주십시오.
- **※** 등급은 수(5점), 우(4점), 양(2점), 가(1점)로 구분하여 주십시오.
- ※ 판정은 교수채용에 있어 합당, 불합당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.
- ※ "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" 평가에서 "양", "가"의 평가를 받을 경우 다른 항목의 평가가 우 수하더라도 "불합당" 평가한다.
- ※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처리[취득점수(등급)/ 전체점수(위원, 등급)]

[양식/교인-9] <신임교원전형위원회 작성용>

### 최종후보자 선정 보고서

학부(학과) :

20 학년도 제 학기 학부(학과) 신임교원 채용 최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.

의 이 버스	후보자						
채용분야	접수번호	성 명					

<b>※</b>	첨부	:	채용분야별	2차	후보자	공개강좌	및	면접평가표	. 각1부.
----------	----	---	-------	----	-----	------	---	-------	--------

20 . . .

위원	(인)	위원	(인)	위원	(인)
위원	(인)	위원	(인)	위원	(인)
위원	(인)	위원	(인)	위원	(인)

신임교원전형위원회 위원장 (인)

# 강의전담교원 임용지원서

20 학년	도 제	악기								접수	먼호		
지원학부				학부					학과		,1	1	
지원분야											사	진	
성 명	(국문)			(영문)				(한문)				이내에	
1. 인적/	· 사항									(가로	. 5cm :	x 세로	4cm)
성 별		남 • 여		국	적				병 역	필	• п]	필 •	면제
생년월일	19 세)	Ļ	1	월		일(만	주	민등록번호			_		
본 적													
현 주 소	(우편변	<u> </u> 호 :	-	)	)				전	자 및	백 :		
(국내연락처)									화	직			
현근무지									번 호	핸드 e-n			
결혼여부	기혼	드미혼	배우기	자 직업					종 교				
2. 학력시	·ት항												
구 분	기	Ź	<u>}</u>	학	亚	명		전 공	학취	위 득일	학 위 취득국	수 료 /과정 증	평점 평균 (G.P.A
고등학교	19	19	•					_		_			_
학 사	19	-	19										/
석 사	20	_	20										/
박 사	20	_	20										/
학위	석사	지도 교수	,			논문 제목			,				
논문	박사	지도 교수				논문 제목							

3. 7	3. 경력사항													
	기			간		근무년	월		근	무	기	관	명	직위(담당업무)
			_			년	월							
			_			년	월							
			_			년	월							
			_			년	월							
			-			년	월							
		•	_			년	월							
						년	월							

4. 기타사항(사회단체 참여현황 등)

위 기록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.

20 년 월 일

지 원 자 : ① 또는 서명

[양식/교인-나-1] <분과전형위원용>

## 강의전담교원(외국인 어학) 기초심사(서류)표

### 지원자 :

구 분	비율 (%)	배점	적 용 기 준	심사점수
채용분야	30	30	채용분야와 동일한 경우	
제중단하	30	25	채용분야와 다르나 강의가 가능한 경우	
		30	2년제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	
교육 경력	30	25	2년제 및 4년제 대학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그 외의 교육기 관(학원포함) 2년 이상	
		20	그 외의 교육기관(학원포함) 2년 미만	
학위	10	10	석사이상	
<b>41</b>	10	5	학사	
기타	30	0-30	상기 외 항목 외에 성실성과 발전성을 감안하여 서류심사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 부여	
계	100			

심사자 :(소속) (성명) (인)

[양식/교인-다] <분과전형위원회 작성용>

### 1차 기초심사(서류)통과자 선정 보고서

학부(학과) :

20 학년도 신임교원 채용 1차 기초심사(서류)통과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.

채용분야	후보자							
세중단아	접수번호	성 명						

*	첨부	:	기초심	심사	(서류	)기준	및	심사표	각1부.
---	----	---	-----	----	-----	-----	---	-----	------

20 . . .

위원 (인) 위원 (인) 위원 (인)

분과전형위원회 위원장 (인)

[양식/교인-라] <신임교원전형위원회 작성용>

# 강의전담교원(외국인 어학)면접평가서

지원학부(학과):

후보자 성명:

항 목	배 점	평	가	심사점수
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	0 ~25			
학교 발전에의 기여도	0~25			
내용 전달의 조직성과 명확성	0~25			
교육 적극성	0~25			
합계				

평가자 성명: (인)

※ 지원자의 제출서류, 기초심사(서류)결과, 면접 등을 토대로 작성하여 주십시오.

※ 서류 : 20% 면접 : 80%

[양식/교인-마] <신임교원전형위원회 작성용>

### 최종후보자 선정 보고서

학부(학과) :

20 학년도 제 학기 학부(학과) 신임교원 채용 최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.

=11 Ó H ∧l	후보자						
채용분야	접수번호	성 명					

※ 첨부 : 채용분야별 면접평가서 각1부.

20 . . .

위원	(인)	위원	(인)	위원	(인)
위원	(인)	위원	(인)	위원	(인)
위원	(인)	위원	(인)	위원	(인)

신임교원전형위원회 위원장 (인)